##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0 발의연월일: 2020. 6. 18.

발 의 자:조경태・이명수・임이자

김미애 · 추경호 · 전봉민

김예지 · 김용판 · 이 용

백종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이 법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이하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기간 내 이를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92년 6월 1일에 도입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정책이주지'는 도시개발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해 196 0년~1970년에 공공이주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고밀도 노후 주거 지역으로, 급격한 건축물 노후화로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상당 기간 정비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위반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전부개정('08. 3. 21.) 이후부터 '92. 6. 1. 이전 위반 건축물에도 이행강제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정책이주지 주민 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허가권자는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로서 '92. 6. 1. 이전 이

법 등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92. 6. 1. 이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의 처분은 '92. 6. 1. 이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8974호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단서 신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허가권자는 정책이주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을 말한다)에 있는 건축물로서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법률 제8974호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정책이주지에 있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 대하여 적용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
한 특례) ①・② (생 략)	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허가권자는 정책이주지(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도시정비 등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
	하여 주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
	성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
	후지역을 말한다)에 있는 건축
	물로서 법률 제4381호 건축법
	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제80조에 따
	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
	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
	을 면제하여야 한다.
법률 제8974호 건축법 전부개정	법률 제8974호 건축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	법률 부칙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
치)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치)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	

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다. <단서 신설>

있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하여

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

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